

第112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6月27日(水) 11時21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11時21分 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開議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6월은 崔康洵 幹事님의 부고로 아픔이 큰 한 달이었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장은 비통하고 애석한 마음을 차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며칠 간 많은 비도 내려주었습니다. 이 비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목숨보다 귀한 비입니다. 결국 崔康洵 幹事님은 돌아가시면서도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의 생사는 운명이라고 하나 의정활동에 오랜 시간을 함께 한 동료의원이기에 본인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바른 정의감으로 매사에 진취적인 생각을 지니셨던 고인의 정신은 우리 의회 곳곳에 또 우리 위원들의 가슴속에 하나하나 깊이 새겨져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를 이끌 모든 선·후배 및 동료위원들에게 큰 지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금번 崔康洵 幹事님의 부고에 영결식을 포함한 어려운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단결하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의 임시회가 끝나면 숨돌릴 시간도 없이 바로 다음주부터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지역 의정활동도 매우 중요하시겠지만 위원님들 본인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상정된 조례이지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擔當主事の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張慶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6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1時25分)

○委員長 李東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의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시지 않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東奎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가뭄 때문에 많이 애태웠다가 이제 장마로 인해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표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연장을 만료기한에 임박해서 승인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구분청으로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불편해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설치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서울시에서 주관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는 종로구에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욕구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맞춤형정의 걸음마가 드디어 시작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는 맞춤형정의 기능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찾아서 주민들이 더욱더 구정을 신뢰하고 믿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

(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2001년 6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과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본청에 설치된 한시기구·정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하였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1년 6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설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별로 시범동을 지정하여 동기능 전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2000년 3월 6일 시범실시에 따라 동기능 전환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서울시에서는 일부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기능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년 7월 4일에는 동기능 전환사업을 전담하는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되어 자치구별로 자치행정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 발전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한시기구 연장 운영을 검토하게 되었고 검토 결과 아직까지 동기능 사업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서 연장운영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동기능 전환 사업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역청소, 세무, 병사 등 전환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기능 전환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센터 운영을 포함한 기능전환을 총괄 지원하고,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전담조직의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 강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능 전환된 업무의 명확한 처리지침 시달과 업무처리 부서 및 방법 등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 업무전환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는 위원님들 심의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行政管理局長님! 총무과에 동정계가 있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옛날에 총무과 동정계가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계로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니까 동정계가 없어지고 자치행정계로 넘어갔다 그 말이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玄壽漢委員 여기 여러 가지 나왔는데 청소, 세무, 병사 이런 것은 각 과에 있는데 구태여 자치행정과에서 터치할 이유가 있는지 다른 과에서는 힘이 모자라 못하나?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무슨 말씀이십니까?

○玄壽漢委員 세무, 청소나 병사 같은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청소과나 세무과는 뭐하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닙니다. 그 기능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기능과에서 하되 동기능 전환으로 현재 조정된 동의 기능을 총괄하는 과가 자치행정과라는 말입니다.

○玄壽漢委員 제가 여쭙보는 것은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안건인데 금년도 본예산 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아시겠지만 실비보상비로 해서 10만원 책정된 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60만원을 증액편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알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동에 그것이 전혀 하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6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증액을 전부 실비보상금에 넣었느냐 이 말이지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회계법상 장·관·항·목은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추진비하고 예산회계법상 기타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완전히 판이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가 없어 편성을 못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기타보상금은 집행에서,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엔 업무추진비인데 왜 그 돈이 집행이 잘 안되냐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관할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간 “지역실정에 맞게끔 집행을 하되 회계규정에 준수해서 해라” 그런데 그러면 반대급부가 생겨서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에 일인당 최소한 5,000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기능이 없는 분이 봉사를 할 때, 그래서 집행해서 저희들은 일단 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 성격에서 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는 데 그럼 처음 예산편성 증액을 할 때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라고 했으면 안 할 거 아냐! 된다고 그래서 해놨는데 이제 와서 실비보상금으로 해놨으니까 항목이 달라서 전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조금도 기여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했어야지.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때는 안된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전체 금액의 한도가 이미 찼기 때문에 이미

○玄壽漢委員 그럼 그때 찼다고 얘기를 했으면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니,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편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못하니까 그래도 운영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玄壽漢委員 그래요. 이것이 기타보상금으로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요만큼도 기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회의 때나 견학 때 보면 차비나 이런 것으로 예를 들면 5,000원씩밖에 안 나가잖아!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 자치위원들 모여서 회의를 하면 식사라도 하고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될 것 아냐! 그 비용이 전혀 보조가 안되니까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있으니까 그분들이 내지 않으면 문화복지센터 위원장이 매달 하다보니까 전부다 제가 알기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는 구청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더 넘어갈 수가 없다 괜히 편성해 놓고 불용 처리되는 거 아냐! 단돈 1억이든 1,000만원이든 아껴서 써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예산이 다시 불용 처리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각 동장들은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속수무책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저희들은 현재 예산회계 법에는 기타보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범주에서 규정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동장들한테 분명히 지시할 때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행정의 묘를 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도 안되는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타보상금은 원 성격대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위원님들이 불편한 점은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문제는 예산회계 예규에 의해서 하나씩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강조할 때 주민복지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에는 10만원의 실비보상금만 책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안되겠다, 한 달에 월 1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 얘기가 나왔다가 너무 많다 예산절감하자 그래서 60만원을 증액 편성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잘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각 동에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 한시기구를 1년 6개월 더 연장하면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업무상의 전환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과를 뒤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총충시하만 생기지 밑에서는 일을 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막막하다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동기능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님들은 높은 식견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0만원씩 계상한 것인데 이미 그 계상을 할 때는 다른 비목에는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했고 또 기타보상금의 집행은 규정대로 5,000원씩 뺏아도 문화복지위원회가 여러 번 열리면 전체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와 같이 그대로 임의집행하지는 못한

다 해서 저희들이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항목이 다르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원칙을 따져야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업무추진비는 구청 한도액 때문에 더 넣을 수 없다라고 했으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해놓고 이제 와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못쓰고 불용 처리되어 버리잖아!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지금 일부 문화복지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는 전액이 집행되고 법규로 따지는 데는 일부玄壽漢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곳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일반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조그만 동을 자치센터로 수리해서 만들었을 때 협소한 동이 있고 넉넉한 동이 있다고요. 면적이, 그 넉넉한 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하는 데는 그 돈도 사실 적어요. 그러나 협소한 동은 문화복지센터가 좁으니까 프로그램을 한두 개밖에 못 만들어서 쓰는 데는 그나마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항목이 다르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행을 못하겠다 하면 단 일이 억으로 조그만 길이라도 개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만들어놓게 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되는 건 되고 안되는 건 안된다고 딱딱 잘라서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편성하실 때 의회에서 운영이 어려운 것을 생각해 주셔서 가지고 편성해 주신 겁니다. 현재 집행도 주민문화복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면 최소한도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만약에 가름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뽑을 수 있어요. 또 요즘은 장마철 또 지역의 크고 작은 관계로 다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항목별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바로 뽑지는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玄壽漢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그렇다면 말이죠. 1억 3,600인가요? 800인가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1억 3,600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그러면 그것은 금년에 다 소모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지금 현재 각 동에 이미 분기별로 배정이 되니까

○委員長 李東奎 그러니까 금년에 다 소모되겠느냐고요? 가능하겠느냐고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가능합니다.

○委員長 李東奎 속기록에 남습니다.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것은 동에서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委員長 李東奎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없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오랜기간 동안 실왕실래하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넉넉해서 그런지 서울시에서 뭐 하면 독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곳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을 전부다 현역의원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침이 안된다고 하면서 못했는데 그래도 종로구가 강남구를 앞서간다고 생각해서 적어도 종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구청이나 의회의원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런 면모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지침에 의해서 안됩니다 하는 그런 반대가 강남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현역의원들이 안하고 강남구는 현재 현역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강남구의회 의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여러 번 의원들이 난상토론도 하고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강남구의회는 역시 파워가 센 모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대해서 주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입니다. 지금 鄭泰淳委員님께서 강남구의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구가 정부(안)에 아마 구청장도 지금 집권당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자부나 정부의 시책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구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강남구도 다시 이번에 직제를 하나씩 바꿔 가는데 처음엔 전반적으로 정부(안)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안)을 하나도 따르지 않겠다” 우리 구 같은 데는 시 보조금이나 정부에서 사실 도움을 받고 있는데 강남구는 그런 것을 좋다 하나도 정부 수혜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손대지 말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대다수 구가 정부(안)에 따르고 우리 종로구도 시범적으로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鄭泰淳委員**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보통 지역마다 현역 의원하고 위원장하고 또 지역의 갈등이 많이 있는 데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것을 제일로 간파하고 직시한 곳이 강남구의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의원하고 대립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키우는 것은 주민의 갈등 요인이 발생된 데에다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종로구의회도 여러 번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주무국장이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선취하는 것은 강남구의회한테 뺀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주장을 올바르게 할 때는 ‘그렇습니까?’ 하고 의기투합해서 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고맙습니다.

○**鄭泰淳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鄭泰淳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상식에 속하는 건데요 오늘 안이 우리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날짜 연장하는 것 기간 연장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왜 기한을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동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正大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평가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正大委員** 너무 가치랄까 효과랄까 창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동감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참고로 하는데 왜 이렇게 별로 가치도 없는 제도를 무엇 때문에 1년 6개월을 더 연장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해주실 수 없어요? 그냥 상부의 지시만 따르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이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지금 만약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될 때는 현재 과감히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구에서 이런 맞춤형 행정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욕구를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글썄, 나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사실 총무과를 제가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가 결국은 하나 더 과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원래는 자치행정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이겠습니까? 라는 현재 자치행정과가 동기능 전환의 문제로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는 정책으로 알았는데 상당히 주민들한테서 멀어진 정책으로 많이 창출을 가져왔거든요. 이런 제도를 왜 1년 6개월씩이나 연장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 국장님이 어떠한 소신이 없는, 상부의 지시만으로 따라간다면 우리 모두가 지방자치라는 개념은 없다는 소리로 갑니다. 뭔가 수정 건의를 한다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장단 회의라든가 구청장 회의에서, 시 간부 회의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과거에는 상당히 계가 많았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담당주사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결국은 과거의 동정계가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런데 지금은 계가 다 없어진 것입니까? 계라는 존칭이 없어졌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원래부터 계가 담당주사로, 저희들이 호칭할 때는 계장이라고 합니다마는

○**金正大委員** 전에는 인사계다 총무계다 이런 계가 있었잖아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담당주사로

○**金正大委員** 무슨 계가 아니고 지금은 계가 존치하지 않습니까? 그냥 담당으로 되어 있네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담당주사라는 것은 과거에 계장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무슨 계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업무분장표가 무슨 계라는 것이 전혀 없어졌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팀제로 되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자치행정담당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팀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金正大委員**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현 정부가, 국장님! 내가 솔직한 내 뜻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게 동기능 전환으로 해가지고 동직원들이 전부다 약 50% 구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지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들어온 게 아니고 구조조정으로 준 겁니다.

○**金正大委員** 내가 알기엔 절반도 안 줄었어요. 동사무소에서 8명 들어왔으면 그 8명이 다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일부 보충도 하고 그랬습니다.

○**金正大委員** 보충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별로 구조조정이 별로 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 8명씩 10명씩 기능전환에 따라 가지고 다 구청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8명이나 10명이 들어온 부분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퇴직했다고 보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거의 많이 나갔습니다.

○**金正大委員** 아닌데요. 그런데 인원은 나갔는데 그러면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 줄어야 되는데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과는 늘어났는지 이게 바로 결국은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로 가져가고 또 다른 데에서 하던 일부를 자치행정과로 가져오고 이렇게 오히려 과만 신설되고 증설된 뉘앙스가 많거든요. 과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은 분명 맞죠? 과장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증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회 쪽에서도 알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의 업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인원하고 정원하고 일자를 연장하는 거니까 정원하고 무슨 계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팀이라고는 말 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담당주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담당주사가 과거에 동정계장 하던 사람이 지금 김철안 계장이 자치행정담당으로 되어 있고, 또 뭘니까? 자치사업담당은, 자치사업은 뭘

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동기능에 관한 동사무소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주관합니다.

○**金正大委員** 자치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센터를, 다시 말해서 건물들을 관리하는 팀이다 그런 말이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金正大委員** 그러면 또 사회진흥을 하는 담당은 됩니까? 이것은 문화진흥과에서 과거에 하던 거죠? 또 이것은 문화진흥과에서 일부를 가져오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총무과보다는 자치행정과가 수석과 같은, 수석과장님 같은 그런 인상이 짙는데 실제로 총무과를 보면 민방위하고 의회협력하고 인사담당 이런데 왜 이런 것을 구에서 과를 하나 늘려가면서 분산해 가지고 과를 하나 더 신설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런 제도를 1년 6개월 연장한다니까 상당히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순된 제도다, 그런데 왜 이런 모순된 제도를 그냥 자꾸 연장을 해가는 건지 우리 국장님은 계속 위의 편만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생활민원담당은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주민들의 불편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현장 기능을 순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金正大委員**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2명이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2명이 있는데 담당주사가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담당주사는 보통 담당주사면 옛날 같으면 담당계장인데 2명이 있으면 계장이 한 분이다? 그 계장님은 어떤 분인지 몰라도 부하가 너무 적어서 뭔가 업무분장 자체도 모순이 있다, 업무분장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정원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 생활민

원담당은 김건태 계장님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직원이 2명밖에 없다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직원을 포함해서 두 사람입니다.

○**金正大委員** 그런 계도 있습니까? 아주 미니 팀이네요. 모순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 의원들도 업무분장이 모순되었는지 중복성이 많거든요. 사회진흥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뭘 진흥하는, 문화진흥이라고 하면 문화 측면에서 진흥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은 사회복지과도 있는데 또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나 중복성 때문에 이런 자체가 억지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분장표하고 정원 리스트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金正大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서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에게 정정요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앞서 玄壽漢委員님께서 질의하실 당시에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예산편성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철회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으로 지금 반영시킨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고 하셨는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時05分 散會)

○出席委員 8人

李東奎 鄭泰淳 千相旭 玄壽漢
劉燦鍾 洪起瑞 金正大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鄭聖洙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